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1282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7471)	채현일의원	2026. 3. 13.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8.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8.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8244)	고동진의원	2026. 4. 10.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8.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8.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9060)	이달희의원	2026. 5.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6.08.2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6.08.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08.26.)는 위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3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09.01.)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고의 법정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시로만 제한하고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수협·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차이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금고의 경우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그 결격사유로 금고의 회원이 아닌 자를 규정하고 있어 회원만이 상근감사를 맡게 되므로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은 전임자 등의 남은 임기 동안만 재임하게 되어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게 하여 상호금융기관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서로 충당함으로써 금고 운영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것임. 또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여 상근감사

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하여 중앙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는 회원이 아닌 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단서)

나.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금 보전 순서를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명시함(안 제35조제2항 · 제5항)

다. 재 ·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일원화함(안 제64조의2제6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근이사”를 “상근이사 및 상근감사”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법정 적립금”을 “법정적립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손금(貸損金)의 상각(償却)”을 “손실금의 보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손의 보전(補填)”을 “손실금의 보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을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한다.

제64조의2제6항 후단 중 “제20조제3항 후단”을 “제20조제2항 중 “임원”은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20조제3항 후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근감사 및 중앙회장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64조의2제6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근감사 또는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8조제3항에 따른 <u>상근이사</u> 는 제1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① --- ----- ----- ----- ---- <u>상근이사 및 상근감사</u>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제35조(적립금과 손익금의 처리)
①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자기자본(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5 이상을 <u>법정 적립금</u> 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① ----- ----- ----- ----- ----- ----- ----- - <u>법정적립금</u> 으로----- ---.
② 금고는 <u>대손금(貸損金)</u> 의 상각(償却)이나 해산의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배당에 충당하지 못한다.	② ----- <u>손실금의 보전</u> ----- ----- ----- -----.
③ 금고는 <u>결손의 보전(補填)</u> 과	③ ----- <u>손실금의 보전</u> -----

불가항력에 의한 회계사고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으로서
매 사업연도마다 잉여금의 100
분의 20 이상을 특별적립금으
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금고는 사업연도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
적립금, 임의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되, 잔여손실금이
있으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한다.

⑥ ~ ⑩ (생략)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생략)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0항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19조제8항, 제20조제2항, 같
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
·제12호의2·제13호·제13호
의2·제14호·제15호, 제21조제
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2,

-----.

④ (현행과 같음)

⑤ -----
-----미처
-----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
립금, 법정적립금의-----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64조의2(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0항 본문, 제2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2항 중 “금고”는 “중앙회”로, <u>제20조제3항 후단</u>, 제22조의2제6항, 제23조의2 및 제27조제1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23조의2 중 “지역금고”는 “중앙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25조제6항 중 “이사장”은 “회장과 상근이사”로, “감사”는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⑦ ~ ⑩ (생략)	----- ----- ----- -. ----- ----- ----- -----제20조제2항 중 “임원”은 “임원(회장은 제외한다)”으로, 제20조제3항 후단----- ----- ----- ----- ----- ----- ----- ----- ----- ----- ----- -----. ⑦ ~ ⑩ (현행과 같음)
--	---